

문서번호 : KS 제2006-001호
 발송일자 : 2020년 06월 01일
 수 신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경산 서회스타힐스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요청의건

경산 중방동 서회스타힐스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공급개요 및 일정

- 현장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296-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8층 10개동 총 960세대중 260세대 일반분양 및 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 총 260세대 중 111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 일정계획(예정)

| 구 분 | 일 자 | 참고 사항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7.10.(금) | 건본주택,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
| 건본주택 개관 | 2020.07.11.(토) |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147-6 |
| 특별공급 접수일자 | 2020.07.20.(월) [08:00~17:30]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2020.07.21.(화) [16:00이후] | 당사 건본주택에 게재 |
| 동·호수 발표 | 202.07.28.(화) | 당사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 |
| 계약 기간 | 2020.08.10.(월)~08.12(수) | 당사 건본주택 |

*모집공고일 등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 분 | | 59 | 73A | 73B | 84 | 합 계 |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등 | 2 | 1 | 1 | 1 | 5 | |
| | 10년이상 장기복부제대군인 | 2 | 1 | 2 | 1 | 6 | |
| | 장애인 | 3 | 2 | 2 | | 7 | |
| | 중소기업근로자 | 3 | 2 | 2 | 1 | 8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10 | 6 | 7 | 3 | 26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기 준 | 우선공급(75%) | 15 | 9 | 10 | 5 | 39 |
| | | 일반공급(25%) | 5 | 3 | 3 | 2 | 13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2 | 2 | 2 | 1 | 7 | |
| 합 계 | | 42 | 26 | 29 | 14 | 111 | |

3. 특별공급 자격사항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07. 10.) 현재 경상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 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상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 |
|-------------|--|
| 주택공급신청자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 무주택여부확인 대상자 |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세대원(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의 ①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세대주 및 세대원 중)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해당되는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 청약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장애인 특별공급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제3항 관련, 별표 2)

| 구 분 (전용면적 기준) | 거주지역 |
|------------------|------------|
| | 경산시 및 경상북도 |
| 85㎡이하 | 200만원 |
| 102㎡이하 | 300만원 |
| 135㎡이하 | 400만원 |
| 모든면적 | 500만원 |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정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계기관의 장이 우선순위에 따라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금융결제원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의 전산검색결과(주택소유여부 등)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산검색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당사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만일 소명 불가시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 사항은 추천 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모집공고일 이후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모집공고일 이후 당사에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동·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

4. 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의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 불가함.**
- 본인(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신분증 추가)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 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구비서류

| 해당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등 청약통장 | 당사 견본주택 비치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홈페이지에서 발급 |
| 순위(가입)확인서 |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은 제외) |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1통 추가) |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 특별공급 신청용 |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도장 |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 해당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위임장 | 신청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신청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 특별공급신청 위임용 |
| 대리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장 |

5. 유의사항

- 2020.04.17.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함.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됨.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음.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견본주택 : 경상북도 정평동 147-6
- 전화번호 : 053-801-3900
- 홈페이지 :

5. 참고자료

■ 사업개요

| | | | |
|-----------|--|--------------|--|
| 사업지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297-60외 219필지 | | |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 |
| 대지면적 | 40,145.0000㎡ | (12,143.86평) | |
| 건축면적 | 5,967.3221㎡ | (1,805.11평) | |
| 연면적 | 121,950.3828㎡ | (36,889.99평) | |
| 건폐율/용적률 | 16.39%/249.05% | | |
| 주차대수 | 아파트 1,297대(세대당 1.35대) 근린생활 4대 / 총 1301대 | | |
|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28층, 10개동 | | |
| 주택형 및 세대수 | 59㎡(25형) 98세대, 73A㎡(29형) 63세대, 73B㎡(29형) 68세대 84㎡(33형) 31세대, 총 960세대 | | |

■ 위치도



■ 조감도



*. 사업개요, 조감도 및 평면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 오픈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산 중방동서희스타힐스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 및 추천양식

■ 배정내역

| 주택형 | 세대별 공급면적(m ²) | | | 배정호수 | 비고 |
|-----|---------------------------|----------|--------|------|----|
| | 주거전용 | 계약면적 | 전용율 | | |
| 59 | 59.9945 | 121.1599 | 75.51% | 42 | |
| 73A | 73.9763 | 148.9113 | 75.88% | 26 | |
| 73B | 73.9873 | 148.2634 | 76.41% | 29 | |
| 84 | 84.9989 | 169.668 | 76.87% | 14 | |
| 계 | - | - | - | 111 | |

※ 통상 주택평형은 세대별 공급면적(m²) * 0.3025로 산출

■ 추천양식(예시)

| 주택형 | 순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휴대폰) |
|-----|----|----|--------|----|----------|
| 84 | 1 | | | | |
| 84 | 2 | | | | |
| 74 | 1 | | | | |
| 계 | | | | | |

※ 반드시 추천 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우선순위를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미 지정시 타 기관 우선순위 지정자에게 우선 배정됨에 따라 후순위로 밀려 배정이 불가할 수 있음)